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1
----------	------------

제안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보전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를 인하하고, 본래의 개방취지를 살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나.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해당학교의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개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 다. 학교시설을 단기사용할 경우에는 장기사용과 같이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5조제1항).
- 라.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 불허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 마. 1일 사용허가 시간을 3시간을 제한하되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3항).
- 바.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안 제8조제4항).
- 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별표).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개방한다”를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자율적으로”를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을 “학교장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3항 중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의2제2항 중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용허가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 설 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 육 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 동 장	일 반	20,000		50,000	1시간
	인 조 잔 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 위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 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p> <p>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사용료) ① ~ ③ (생략)</p> <p>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p> <p><신설></p> <p><신설></p> <p>【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용허가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p> <p><신설></p> <p>제8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제> <신설></p> <p>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p> <p>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p> <p>【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사용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생활체육·평생교육</th> <th>일반·행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교실</td> <td>10,000</td> <td>20,000</td> <td rowspan="3">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td> </tr> <tr> <td rowspan="3">체육관</td> <td>360㎡미만 10,000</td> <td>40,000</td> </tr> <tr> <td>360㎡이상 720㎡미만 15,000</td> <td>50,000</td> </tr> <tr> <td>720㎡이상 20,000</td> <td>60,000</td> </tr> <tr> <td rowspan="2">운동장 (천연잔디포함)</td> <td>일반 20,000</td> <td>50,000</td> <td rowspan="2">1시간</td> </tr> <tr> <td>인조잔디 40,000</td> <td>100,000</td> </tr> </tbody> </table>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생활체육·평생교육</th> <th>일반·행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교실</td> <td>10,000</td> <td>20,000</td> <td rowspan="4">공공요금 별도 측량기 구로 산출 한 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 한 금액 징수</td> </tr> <tr> <td rowspan="3">체육관</td> <td>360㎡미만 30,000</td> <td>40,000</td> </tr> <tr> <td>360㎡이상 720㎡미만 40,000</td> <td>50,000</td> </tr> <tr> <td>720㎡이상 50,000</td> <td>60,000</td> </tr> <tr> <td rowspan="2">운동장 (천연잔디포함)</td> <td>일반 20,000</td> <td>50,000</td> <td rowspan="2">1시간</td> </tr> <tr> <td>인조잔디 40,000</td> <td>100,000</td> </tr> </tbody> </table>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공공요금 별도 측량기 구로 산출 한 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 한 금액 징수	체육관	360㎡미만 3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40,000	50,000	720㎡이상 5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생활체육·평생교육</th> <th>일반·행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교실</td> <td>10,000</td> <td>20,000</td> <td rowspan="3">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td> </tr> <tr> <td rowspan="3">체육관</td> <td>360㎡미만 15,000</td> <td>40,000</td> </tr> <tr> <td>360㎡이상 720㎡미만 20,000</td> <td>50,000</td> </tr> <tr> <td>720㎡이상 25,000</td> <td>60,000</td> </tr> <tr> <td rowspan="2">운동장 (천연잔디포함)</td> <td>일반 20,000</td> <td>50,000</td> <td rowspan="2">1시간</td> </tr> <tr> <td>인조잔디 40,000</td> <td>100,000</td> </tr> </tbody> </table>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공공요금 별도 측량기 구로 산출 한 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 한 금액 징수																																																																							
체육관	360㎡미만 3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40,000	50,000																																																																								
	720㎡이상 50,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천연잔디포함)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40,000	100,000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장 인 조 잔 디 (찬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 일반교실은 1실, 1시간을 기준으로 함. ※ 체육관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함.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에 따라”를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급 학교”란”을 ““학교시설”이란”으로, “를”을 “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사용”이란”을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를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

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시”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시”는 “요구”로, “주의의무”는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영리로 보는 행위) ① 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2. 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

1.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
2. 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대로 보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전대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기준 : 1시간)

시 설 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 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 육 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 반	20,000	50,000	1시간
	인 조 잔 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 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 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를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 <p>제5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조(사용허가)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p> <p>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p>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p> <p>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p> <p>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p>

현행	개정안
<p>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p> <p>②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p> <p>③ 학교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용내용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재임대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④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용 시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⑤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p> <p><신설></p> <p>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생략)</p> <p>제8조(사용료)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신설></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4. (생략) 5.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② <u>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u>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천재지변 또는 <u>제9조제1항제1호에</u>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p> <p>4. ~ 5. (생략)</p> <p>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u>지시에</u>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u>주의의무를</u> 다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13조(준용) (생략)</p> <p>제14조(시행규칙) (생략)</p> <p>【별표】</p>	<p><u>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u></p> <p>② <u>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u>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u>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천재지변 또는 <u>제10조제1항제1호에</u>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u>요구에</u>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u>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u> 다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u></p> <p>제13조(영리로 보는 행위) ① <u>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u>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u></p> <p>2. <u>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u></p> <p>3. <u>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u></p> <p>1. <u>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u></p> <p>2. <u>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u></p> <p>제14조(전대로 보는 행위) <u>제10조제1항제10호의 전대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u>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u></p> <p>2. <u>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u></p> <p>제15조(준용)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별표】</p>

현행				개정안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시설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일반교실	10,000	20,000	
체육관	360㎡미만	10,000	40,000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20,000	50,000	1시간	운동장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 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 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	성명	전화		신청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주소	FAX	
사용시설명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사용인원			
기타				기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				○○○학교장 귀하			